

접수번호		M291-26- .		검사자	안진현 (서명)	
검사항목		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. 제6부. 흔들놀이기구				결과치 "-": 해당없음
일반		흔들놀이기구는 이 규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부의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.				☐ 합 ☐ 불 ☐ -
자유하강 높이	1형	1 500 mm 이하일 것.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2형, 3형 4형	1 000 mm 이하일 것.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5형, 6형	2 000 mm 이하일 것. (6형의 경우 최대흔들림각도(20°)에서의 자유하강높이를 측정)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좌석/스 탠드 기 울기	1형, 2형 3형, 4형	부록B에 따라 시험했을 때, 좌석/스탠드의 최대기울기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것. [1형, 4형 - 20° 이하] , [2형, 3형 - 30° 이하]				()° ☐ 합 ☐ 불 ☐ -
지면 간격	1, 2B, 3B, 4, 5, 6형	동작 극단 위치에서 230 mm 이상일 것 (제동효과가 있거나, 극단동작이 수평적 방향일 때 적용 하지 않음) (4형의 경우 항상 230 mm 이상)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끼임, 짓눌림		부록C에 따라 시험했을 때, 접근 가능한 이음쇠나 지지부품의 틈새는 제1부의 '구동부품'기준 및 '엮매임에 대한 보호'기준에 부합할 것.				☐ 합 ☐ 불 ☐ -
동작의 제한		기구의 갑작스러운 멈춤 또는 돌연한 반전이 없도록 움직임의 양극단 쪽으로 점차적으로 억제 될 것. (예, 스프링 사용 또는 기타 제동장치 사용)				☐ 합 ☐ 불 ☐ -
발판		지면간격이 230 mm 미만이고 그 구조가 제동되지 않는 경우, 각 좌석에는 발판이 제공될 것. 발판은 도구없이 회전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.				☐ 합 ☐ 불 ☐ -
손잡이		각 좌석/스탠드에는 손잡이가 제공될 것. 도구 없이 회전할 수 없도록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.				☐ 합 ☐ 불 ☐ -
		손잡이(봉, 핸들)의 직경은 제1부의 '움켜잡음'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. (횡단면 16~45 mm)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	부록E (링게이지)에 따라 손잡이, 발판 끝의 어떠한 부분도 게이지 밖으로 돌출되지 않을것				☐ 합 ☐ 불 ☐ -
측면형상		20 mm 이상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하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할 것.				☐ 합 ☐ 불 ☐ -
하강 공간	1형, 2형 3형, 4형	기구의 가장 극단적인 위치 둘레로 측정했을 때, 1 000 mm 이상일 것. (단, 기립된 형태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구의 경우 1 500 mm 이상일 것.)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5형, 6형	제1부 '하강공간의 범위' 기준에 부합할 것.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고정부 노출		자유하강높이가 600 mm을 넘지 않는 1인용 흔들놀이기구의 경우, 노출된 고정부는 좌석/스텐 드 폭의 1.3배를 넘지 않을 것.				노출된 고정부 () mm 좌석/스탠드 폭 () mm ☐ 합 ☐ 불 ☐ -
특 정 형 식 요 구 사 항	1형	축 지점에서 2 m 떨어진 곳에 부록D에 따라 시험했을 때, 측면의 편차는 140 mm를 초과해서 는 안된다.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3A형	3A형 흔들놀이기구에 지정된 사용자 수의 하중을 가하고 부록D에 따라 시험했을 때, 수직축을 중심으로 각도 변화가 5° 미만일 것.				()° ☐ 합 ☐ 불 ☐ -
	4형	전체 이동범위는 600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.				() mm ☐ 합 ☐ 불 ☐ -
	6형	하늘시소의 자유공간은 제1부의 '앉음'에 적합할 것 주 이동방향으로 사용자가 흔들 때, 움직이는 부분의 흔들림 각도는 20° 미만일 것.				☐ 합 ☐ 불 ☐ - ☐ 합 ☐ 불 ☐ -
☐ 1형 ☐ 2A형 ☐ 2B형 ☐ 3A형 ☐ 3B형 ☐ 4형 ☐ 5형 ☐ 6형		특이사항				

(/)